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4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백혜련·이용우·김기표

서미화 • 이수진 • 박상혁

김한규 · 천하람 · 오세희

민형배 · 남인순 · 문진석

이원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의사,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.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·지자체·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(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1. 정기적 건강진단
- 2. 예방접종
- 3. 모자보건전문가(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보건진료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0조(임산부・영유아・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・영유 아・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건강진단・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(의 사・한의사・조산사・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 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에게 그 가 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 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<u>신</u> 설> <<u>신</u> 설> <신 설>

제10조(임산부・영유아・미숙아 제10조(임산부・영유아・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 ① 국가와 등의 건강관리 등) ① 국가와 기방자치단체는 임산부・영유 기방자치단체는 모든 임산부・ 영유아・미숙아등에 대하여 다 영유아・미숙아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적으로 건강진단・예방접종을 한다.

- 1. 정기적 건강진단
- 2. 예방접종
- 3. 모자보건전문가(의사·한의 사·조산사·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가 가정을 방문

	하여 실시하는 보건진료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업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
	적인 실시 방법 등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한다.